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0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권칠승·박용갑·김 윤

전진숙 • 박해철 • 서미화

홍기원 • 한민수 • 정준호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· 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 ·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안전기준은 공동주택·상가·오피스텔·주택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·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5 등). 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5제1항 중 "안전사고 예방"을 "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안전기준은 공동주택·상가·오피스텔·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·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66조제3호의2 중 "제14조의5제2항"을 "제14조의5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・운	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・운
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환경	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
부장관은 <u>안전사고 예방</u> 을 위	<u>환경미화원 및 주민</u>
하여 수집・운반차량과 안전장	의 안전사고 예방
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	
생활폐기물을 수집 · 운반하는	
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	
(이하 이 조에서 "안전기준"이	
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	
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	
여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② 안전기준은 공동주택・상가
	·오피스텔·주택 등의 장소
	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
	되어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
	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・
	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
	폐기물을 수집 · 운반하는 자에
	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
	지원을 할 수 있다.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cdot \underline{5}$ (현행 제2항 및 제3항

제6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6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---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---벌금에 처한다. ----1. ~ 3. (생 략) 1. 3의2.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 3의 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---한 자 ---3의3. ~ 19. (생 략) 3의

과 같음)
제66조(벌칙)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<u>제14조의5제4항</u>
3의3. ~ 19. (현행과 같음)